

# 규정집에 관한 건(검토안)

## 제1장 규정집

**제1조** 본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**제2조** 제1조의 규정은 이사회(운영위원회)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.

**제3조(출자금)**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 공익목적의 특성상 출자금은 환불되지 아니하며 배당이 불가하다.

### 제4조(협찬금 및 광고유치 수수료 지급 내규)

① 본 조합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 기관, 단체로부터 협찬금 및 광고유치를 위하여 해당금액의 20%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수료 지급 시기는 협찬금 및 광고유치 금액이 입금완료 된 15일 이후 지급 할 수 있다.

③ 수수료 지급 내규 외 내용이 발생할 경우는 이사회(운영위원회) 결정에 따른다.

**제5조** 이 규정은 규정집이 완성되어 이사회(운영위원회)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 이후 시행한다.